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 - 772호

산업표준화법 제25조(표시 제거등의 명령) 및 제26조(인증의 취소)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『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』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06년 12월 12일  
기술 표준원 장

## 『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』 중 개정 기준

『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』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『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』 개정 내용: 별첨(973품목,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)
  - 추가되는 품목 : KS D 7016 직조철망 등 25품목
  - 제외되는 품목 : KS C 3304 비닐코드 등 18품목
  - 변경되는 품목 : KS F 4814 폴리에틸렌 물탱크 1품목
  - 변경없는 품목 : KS A 1052 금속계 평파렛트 등 947품목
2. 일반인 열람 : 『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』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 표준원 기술표준정책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,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이 고시 시행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.



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-0830호

##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「정보보호 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
붙임 : 「정보보호시스템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」 1부.

2006년 12월15일  
기술표준원장

부칙 :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

부칙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[www.kats.go.kr](http://www.kats.go.kr)) → 기술표준원 소식 → 고시·광고(462)를  
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기술표준원 공고 제 2006 - 299호

유통산업발전법 제27조 제5항 및 물류표준설비인증요령 제 17조의 규정에 의거 물류표준설비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최종 지정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. 12. 18  
기술표준원장

## 물류표준설비 인증기관 및 성능검사기관 지정현황

신청기관명지정구분업무지정기간 비고한국물류협회인증기관인증신청 접수 및 심사계획 수립 등 물류표준설비인증 요령상의 인증기관 의 임무 '07.1.1~12.31 (1년간)업무시행일: '07. 1. 1한국생활환경경시협연구원성능검사기관 검사신청서의 접수 및 성적서 발급 등 '07.1.1~12.31 (1년간)업무시행일: '07. 1. 1

※ 단, 기술표준원장은 지정기관이 물류인증업무나 성능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기타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우려되어 원만한 인증 또는 검사업무 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 지정기간에 관계없이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


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 - 354호

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6. 12. 19.  
산업자원부 장관

##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(안)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다른법령과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 등에 대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- 가. 중복규제되는 전기용품의 적용범위 조정
- 나. 게임기구의 적용범위 확대

### 3. 의견제출

위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(참조 :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([www.mocle.gokr](http://www.mocle.gokr))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자료

라. 보내실 곳 :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팀

○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기술표준원( 427-716)

○ 전화 : 02)509-7238~41

팩스 : 02)509-7305

전자우편 : oh8075@mocce.go.kr

※ 홈페이지([www.mocce.go.kr](http://www.mocce.go.kr)) 이용방법 : 홈페이지 접속 → 행정정보공개 → 법령정보  
→ 입법예고